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24
----------	-------

발의연월일 : 2018. 10. 10.

발의자 : 박광온 · 송갑석 · 권칠승

김영주 · 전현희 · 김종민

이춘석 · 윤관석 · 김현권

송옥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호 등).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서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 같은 조 제3호다목 · 라목 및 같은 조 제13호, 제3조제2항, 제6조제4항, 제10조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3항 후단, 제20조, 제21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6조의6제3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u>당해</u>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u>당해</u>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2. ----- . ----- <u>해</u> ----- ----- ----- <u>당</u> ----- ----- ----- <u>해당</u> ----- ----- .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3. ----- . ----- ----- ----- .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u>당해</u>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다. ----- <u>해</u> ----- ----- .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u>당해</u>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 <u>해</u> ----- ----- .
4. ~ 12. (생 략)	4. ~ 12. (현행과 같음)
13.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13. ----- .

③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외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의 전자서명 생성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당해 가입자의 동의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이 이용하는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진흥원에 통보하고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第22條(認證業務에 관한 記錄의 관리) ① (생 략)
② 公認認證機關은 加入者認證書등을 당해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消滅된 날부터 10年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第22條(認證業務에 관한 記錄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해당 -----
-----.

제22조의2(공인인증서의 관리 등)	제22조의2(공인인증서의 관리 등)
<p>① 공인인증기관 및 가입자는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u>당해</u> 공인인증서의 기재사항 또는 공인인증서와 결부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p> <p>② 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가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쉬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생 략)2. 가입자가 <u>당해</u> 공인인증서가 발행된 당시에 전자서명 생성 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는 사실3. (생 략) <p>③ (생 략)</p>	<p>① ----- ----- ----- ----- ----- ----- -----. ②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현행과 같음)2. ----- <u>해당</u>----- ----- ----- ----- <p>3.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제26조의6(전자서명이용촉진을 위한 지원) ① · ② (생 략)	제26조의6(전자서명이용촉진을 위한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p>③ 정부는 전자서명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서명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u>당</u></p>	<p>③ ----- ----- ----- ----- ----- <u>해</u></p>

<u>해</u>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u>당</u> ----- -----.
--------------------------------------	--------------------------